

의안 번호	제3619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5월 23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6월 2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6월 19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6월 19일

2. 제안이유

- 우리 시의 자체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나. 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등 신설(안 제15조의2)
- 다. 그 밖에 용어 정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주문사항 : 현재 우리 시의 자체 우수자원봉사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은 약 2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나, 예산 등의 여건으로 실질적인 지원 대상은 10여 명 내외로 제한하고 있음. 이에 따라, 향후 초과 신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연령대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및 세부 선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바임.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